



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」 일부 개정

「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」과 관련하여 개선대상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」의 일부개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.

1. 추진사유 : 「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」 개선대상 조례 지정
2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17조부터 제18조 및 제29조
3. 주요내용
 - 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6042호, 시행 2015.1.6.)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 개정
4. 추진일정
 - 입법예고 : 2015.11월 ~ 12월 중(20일간)
 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12. 23.(수) 예정
 - 구의회 상정 :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(2016. 1월)

- 붙임 :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 3. 관계법령 1부. 끝.

주무관	이재훈	인사팀장	이재봉	행정지원과장	임재홍	행정관리국장	11/24 고한석
협조자	주무관	송수연	법무팀장	이기호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
시행	행정지원과-102227 () 접수						()
우	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						/ http://www.gangbuk.go.kr
전화	901-6324	/전송 901-6319			/ ceylon@gangbuk.go.kr		
							/ 대시민공개